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95. 2. 22

내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2. 15

다. 회부일자 : 95. 2. 15

라. 상정일자 : 95. 2. 21

##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민경철)

가. 제안이유

95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내용이 국회의 법률개정시 수정의결됨에 따라 감면사항을 수정하여 시행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다. 주요골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전액 면제토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백창기)

본조례 개정은 94년말 현재까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해 준 사항을 금년도에 와서 과세한다는 것은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양상이 되므로 본 조례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상위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과정은 무의미하며 지방자치제 시행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